

의안번호	제505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

발의자	김현문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월 15일

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 
(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월 15일

발 의 자 : 김현문, 이정범, 박병천,  
박용규, 박재주, 유상용,  
이양섭

## 1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 
자원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 
있도록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교육  
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- 나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 사업 등(안 제4조)
- 라. 퇴직교직원센터의 설치·운영 (안 제5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바. 포상(안 제7조)
- 사. 시행규칙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

##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퇴직교직원”이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북도 소재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 사업 등)**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2.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3.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
4.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

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5조(퇴직교직원센터 설치·운영)**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퇴직교직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협력체계 구축)**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자원봉사 관련 단체,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7조(포상)**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유아교육법 [2023. 9. 27. 일부개정]

○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“유아”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
4. 삭제 <2012. 3. 21.>
5. 삭제 <2012. 3. 21.>
6. “방과후 과정”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○ 제7조(유치원의 구분)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0. 3. 24.>

1.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2.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)
3.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

### □ 초·중등교육법 [2022. 12. 27. 일부개정]

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 · 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 [전문개정 2012. 3. 21.]

○ 제19조(교직원의 구분)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· 고등공민학교 ·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· 교감 ·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. 다만,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.

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.

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(校務)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.

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시도 · 감독기관(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이 정하며,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○ 제20조(교직원의 임무)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도 · 감독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,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(수석교사를 포함한다)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·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

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

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## □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[2023. 2. 3. 일부개정]

○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,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제2조(보조·보좌기관 등 직급)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"본청"이라 한다)의 부교육감, 국장, 과장, 담당관
2. 교육지원청의 국장, 과장
3.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

○ 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 등) ① 교육감,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, 감사,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 본청의 과·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·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○ 제4조(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

[붙임]

##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 개요
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시 비용 발생

### 3. 관련 조문

-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(안 제4조)

제4조(활동 사업 등)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2.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3.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
4.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# 4. 비용추계 결과

#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.
-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.
-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·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퇴직교직원이 각종 교육활동 지원 시 발생하는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등을 추계함
  - ※ 향후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활성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

##### 나. 추계 결과

- 「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」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150,000천원이 소요되고, 향후 5년간 750,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

### < 연도별 비용 추가 소요 예산 >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합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	7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

##### 다. 추계비용의 상세 내역

- 퇴직교직원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운영(안 제4조)
  - 1) 퇴직교직원의 각종 교육활동 지원
    - 소요예산(안): 150,000천원

- 자원봉사료 100,000천원, 20,000원 × 50명 × 100일  
※ 자원봉사자 예산 편성 내부기준[예산과-6647(22.09.19.)]
- 운영비 50,000천원(교육활동 지원 관련 비용 등)